

공공장소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 과제¹⁾

유해미 선임연구위원

공공장소는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므로 이 글에서는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아동이 배제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그 원인과 대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초등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공공장소에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불편을 경험하고 이용 및 출입을 포기한 공공장소의 유형은 식당과 카페 이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출입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노키즈존’ 등과 같은 공공장소의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 발달의 특성과 다차원적 배제에 대한 낮은 이해도, 여성 양육자에 편견과 혐오표현의 확산, 자녀훈육의 영향 요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 낮은 사회적 포용 인식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는 아동친화 업소 관련 사업의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아동 및 양육자 배려 문화 확산의 추진 근거 마련,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세부과제로는 아동 존중 및 배려의 적극적 조치가 더불어 미술관 등 어린 아동의 접근성이 낮은 공공장소의 유형별로 아동친화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아동은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고 있는가

최근 외국 언론은 한국에서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거액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노키즈존(NO Kids Zone)’ 영업장이 성업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²⁾. 한국의 노키

즈존 현상에 대해 타인을 존중하지 않거나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사회적 특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여성 양육자가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³⁾. 2016년에 자녀를 동반한 부모가 식당의 퇴장 요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부당한 차별이라고 제기한 이후 아동의 공공장소 출입 금지나

1) 이하 내용은 2024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의 진단을 중심으로」 (유해미·김지현·박은정·송신영)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함.

2) 연합뉴스. 2023. 6. 26.,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6AKR20230626068900009>, 2023. 2. 18. 인출.

3) 세계일보, 2024. 2. 20., https://www.segye.com/view/20240220503617?utm_source=dable, 2023. 2. 27. 인출 ; 연합뉴스(2023. 6. 26).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6AKR20230626068900009>, 2023. 2. 18. 인출.

이용 제한에 관한 사회적 논쟁은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의 출입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현상이 문제행동 아동이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양육자에서 비롯되고, 다른 이용객이나 업주의 권리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특정 공간에서 아동의 이용이나 출입금지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으로⁴⁾,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생 등 어린 아동이 간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이 또래와 부모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사회적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는 현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은 사회적 관계 즉,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과 참여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레이 올덴버그(Ray Oldenburg)는 아동이 점차 고립되고 있다고 우려되며⁵⁾,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가정 이외의 이른바 '제3의 장소'⁶⁾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글에서는 식당 등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장소 전반에서 아동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을 탐색하였다. 또한 그 현상의 본질과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그간의 정부 대응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일반국민이 공공의 장소 및 공간에서 아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와 초등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공공장소에 자녀를 동반하여 겪는 어려움에 관한 조사결과를 다루었다.

2. 주요 논의 경과와 대응 정책 현황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초등학교생 이하 아동의 배제에 대해서는 '노키즈존'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도 노키즈존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식당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⁷⁾.

가.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에 아동총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여기에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의 철폐를 포함하였다⁸⁾.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에는 노키즈존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양육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⁹⁾. 이러한 조치는 관련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노키즈존의 관리 방향에 대해 규제 등 강제적 개입보다는 인센티브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고,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양육친화 문화 확산 캠페인 활동, 아동 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¹⁰⁾.

나.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앞서 다룬 중앙정부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노키즈존을 예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지점 영역은 경제, 교육, 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지역 및 사회적 관계 등으로 구성됨(김소은·정익중·정수정, 2016: 8).

5) 레이 올덴버그(Ray Oldenburg)·김보영 옮김(2019). 제3의 장소(The Great Good Placea). 풀빛. p.368.

6) 레이 올덴버그에 의하면, 제1의 장소인 가정, 제2의 장소인 일터 또는 학교에 이어 목적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제3의 장소로서 도서관, 공원을 비롯한 공공시설, 교회, 시장, 카페, 식당, 카페, 이발소, 서점 등과 같은 상업시설도 포함됨.

7) 국가인권위원회(2017) 전원위원회 결정문(2017. 9. 25.). p.6.

8) 보건복지부(2023). 보도참고자료: 노키즈존 철폐 등 아동총회 결의문 14개항 채택(2023. 8. 10).

9) 보건복지부(2023). 보도자료: 노 키즈(NO Kids)에서 온 키즈(ON Kids)로, 아이에 대한 사회의 온(ON)도를 높여드립니다(2023. 12. 28.). p.2.

10) 보건복지부(2023). 보도자료: 노 키즈(NO Kids)에서 온 키즈(ON Kids)로, 아이에 대한 사회의 온(ON)도를 높여드립니다(2023. 12. 28.). p.2.

고, 식당과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조치를 담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제주시에서는 2023년 9월에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동 조례안에 근거하여 제한업소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 및 홍보, 아동의 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활동, 아동 친화업소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¹¹⁾. 이후로 광주시 남구 등에서도 유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¹²⁾.

다음으로 아동을 배려하는 사업으로는 2022년 서울시의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들 수 있으며,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도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 지정 매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메뉴를 판매하거나 아이용 의자와 수저·포크 등을 비치해 아이들의 식사 편의를 제공한다. 해당 매장의 위치와 장소 등 관련 정보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서울생활 테마 지도인 '스마트 서울맵'(https://map.seoul.go.kr/smgis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참여 업체에 유아의자·식기류 등 아이들의 식사를 도와주는 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업체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¹³⁾. 2024년 7월에는 전국 최초로 음식점이나 카페의 업주가 연간 2만원대로 가입할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출시하였다¹⁴⁾. 이를 통해 서울에 소재한 일반 휴게 음식점(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등) 영업을 하는 영업장 면적 100㎡ 기준으로 연 2만 원대의 보험료만 내면, 영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등을 1사고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¹⁵⁾.

부산시 동래구의 '웰컴키즈존' 사업은 2020년 6월 사업체 조사와 연계하여 일반 및 휴게 음식점 4,043개소를 1차 전수조사를 거쳐, 2020년 10월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9개의 음식점을 지정하였다. 해당 업체는 웰컴키즈존 표찰 또는 스티커를 업소 입구에 부착하고, 연 1회 어린이 편의시설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장소 및 공간에서 아동이 배제되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노키즈존에 국한하여 그 확산을 방지하거나 아동 및 양육자를 배려하는 업소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시도는 해당 업소에서만 아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해당 업소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양육자의 행위가 부각되는 등 부정적 여파도 우려되므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3. 공공장소의 아동에 대한 배제의 원인과 실상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상과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특성에 대한 수용성, 사회적 포용에 관한 인식, 차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공공장소의 아동 배제 경험 및 사회적 대응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초등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공공장소에 자녀 동반시 배제 경험과 애로사항에 관한 조사결과를 다루었다. 이들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3508,20231012), 2024. 5. 23. 인출.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1544,20231103), 2024. 5. 23. 인출.

13) 서울시 보도자료(2023). 아이와 함께 오세요... 서울키즈 오케이존, 500개소 확대 운영.

14) 한겨레, 2024. 5. 21.,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1419.html, 2024. 8. 20. 인출.

15) 서울특별시 홈페이지_서울소식_서울정책뉴스,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11832, 2024. 8. 20. 인출.

집 중 조 명

〈표 1〉 설문조사 참여자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맞벌이 가구 여부	
남성	49.4 (593)	맞벌이 가구	45.9 (407)
여성	50.6 (607)	홀벌이 가구	45.2 (401)
연령		모두 근로 안함	8.9 (79)
20~29세	14.3 (171)	결혼 여부	
30~39세	15.2 (182)	미혼/비혼	19.2 (231)
40~49세	18.0 (216)	기혼(사실혼 포함)	73.8 (886)
50~59세	19.8 (238)	사별/이혼	6.9 (83)
60세 이상	32.8 (393)	월평균 가구소득	
초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300만원 이하	22.9 (275)
초등 이하 자녀 있음	30.7 (368)	301~500만원	33.9 (407)
초등 이하 자녀 없음	69.3 (832)	501~700만원	24.4 (293)
		700만원 이상	18.7 (224)
계(수)		100.0(1,200)	

주: 1) 맞벌이 가구는 부와 모가 모두(한부모 가구는 부 또는 모) 주당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임.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도 포함됨.

2) 가구소득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임.

3) 표에 제시된 결과는 가중치 적용되어 일부 수치는 총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기혼자 기준이므로 총 사례수 다름.

〈표 2〉 설문조사 참여자 일반적 특성_초등 이하 자녀 가구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맞벌이 가구 여부	
남성	48.9 (218)	맞벌이 가구	54.9 (237)
여성	51.1 (228)	홀벌이 가구	44.9 (194)
연령		모두 근로 안함	0.2 (1)
20~29세	3.6 (16)	막내 자녀 출생순위	
30~39세	37.7 (168)	첫째 자녀	41.3 (184)
40~49세	48.2 (215)	둘째 자녀	49.3 (220)
50~59세	9.0 (40)	셋째 자녀 이상	9.4 (42)
60세 이상	1.6 (7)	막내 자녀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영아	21.7 (97)
300만원 이하	7.6 (34)	유아	33.0 (147)
301~500만원	38.1 (170)	초등 저학년	23.3 (104)
501~700만원	29.4 (131)	초등 고학년	22.0 (98)
700만원 이상	24.9 (111)		
계(수)		100.0(446)	

주: 1)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응답자가 기준이므로 모든 응답자가 기혼자는 아님.

2) 자녀의 나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 함. 자녀가 2자녀 이상 가구는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함.

가. 일반국민의 아동 배제에 대한 인식과 경험

1) 영유아 특성에 대한 수용성과 사회적 포용의 중요도 인식

아동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영유아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3개 항목 모두에서 ‘그럴 수 있다’고 허용하는 입장이 90%선을 넘어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기대된다.

주요 변인별로는 전반적으로 40대 이상과 자녀를 둔 가구에서 수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20대와 30대와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는 영유아의 특성 즉,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는 상황에 대한 수용성은 유사한 수준이나, 영유아의

〈표 3〉 영유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구분	수용 여부		계(수)
	그럴 수 있다고 봄	이해하기 어려움	
영유아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거나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상황	94.5	5.5	100.0 (1,200)
영유아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문제행동(소리를 지르거나 때를 쓰는 등)을 하는 상황	92.3	7.7	100.0 (1,200)
영유아의 잠재적 문제(기질, 질병, 발달 장애 등)로 인해 부모가 통제하거나 훈육하기 힘든 상황	90.8	9.2	100.0 (1,200)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167.

〈표 4〉 영유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전체	94.5	92.3	90.8
연령			
20~29세	92.8	84.0	80.2
30~39세	94.9	89.6	85.2
40~49세	96.1	96.0	92.8
50~59세	97.5	94.3	94.7
60세 이상	92.4	93.8	94.4
$\chi^2(df)$	8.772(4)	26.156(4)***	41.191(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4.2	93.7	91.7
자녀 없음	95.3	88.8	88.4
$\chi^2(df)$	0.074(1)	10.448(1)**	3.776(1)
초등학교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96.0	94.6	90.0
초등 이하 자녀 없음	93.9	91.3	91.1
$\chi^2(df)$	2.691(1)	4.817(1)*	0.110(1)

주: ① 영유아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거나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상황 ② 영유아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문제행동(소리를 지르거나 때를 쓰는 등)을 하는 상황 ③ 영유아의 잠재적 문제(기질, 질병, 발달 장애 등)로 인해 부모가 통제하거나 훈육하기 힘든 상황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168. 재구성

* $p < .05$, ** $p < .01$, *** $p < .001$

집 중 조 명

문제행동이 발달 특성이나 기질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관련되는 사회적 포용에 관한 일반 국민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법과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평균 4.5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4.4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것'(4.3점)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는 4.0점과 3.9점에 그쳤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중요

시함에 따라 문제행동 아동으로 인한 불편한 상황을 수용하거나, 자녀 동반 양육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주요 변인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포용의 중요도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법과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는 평균 4.5점과 4.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의 사회적 포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어린 자녀를 공공장소에 동반하는 경우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상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사회적 포용의 중요도 인식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중요도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0.5	1.1	18.0	57.2	23.2	100.0 (1,200)	4.0
법과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0.1	1.0	7.1	37.3	54.6	100.0 (1,200)	4.5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것	0.2	0.5	9.6	53.9	35.8	100.0 (1,200)	4.3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0.1	0.6	7.2	39.7	52.4	100.0 (1,200)	4.4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는 것	0.4	2.7	23.6	53.2	20.1	100.0 (1,200)	3.9

주: 5점 평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중요하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172.

〈표 6〉 사회적 포용의 중요도 인식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수)
전체	4.0	4.5	4.3	4.4	3.9	(1,200)
성별						
남성	4.0	4.3	4.2	4.3	3.9	(593)
여성	4.1	4.6	4.3	4.5	3.9	(607)
<i>t</i>	-1.5	-4.6***	-2.8**	-4.4***	-0.7	
초등학교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3.9	4.4	4.2	4.3	3.8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4.1	4.5	4.3	4.5	3.9	(832)
<i>t</i>	3.4**	1.3	1.9	2.9**	1.6	

주: 1) 5점 평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중요하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② 법과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③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것 ④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는 것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173.
** $p < .01$, *** $p < .001$

2) 차별 유형별 심각성과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차별의 유형 중에서 나이에 따른 차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사회에서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지위(소득 등)에 따른 차별'과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평균 4.0점(5점 만점)

〈표 7〉 차별 유형에 따른 한국사회의 심각성 인식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차별 현상의 심각성 정도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남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4.6	20.6	39.4	26.7	8.7	100.0 (1,200)	3.1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1.9	9.8	36.8	38.3	13.2	100.0 (1,200)	3.5
임신 또는 출산의 이유로 인한 차별	2.3	12.1	30.4	37.6	17.7	100.0 (1,200)	3.6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	2.1	14.6	44.3	30.1	8.8	100.0 (1,200)	3.3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	1.4	7.7	34.7	42.1	14.1	100.0 (1,200)	3.6
경제적 지위(소득 등)에 따른 차별	0.6	3.3	21.5	43.6	31.1	100.0 (1,200)	4.0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	1.0	4.6	27.4	41.2	25.8	100.0 (1,200)	3.9

주: 5점 평균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 1점 ~ '매우 심각하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174.

〈표 8〉 차별 유형에 따른 한국사회의 심각성 인식_일반국민: 주요 변인별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전체	3.1	3.5	3.6	3.3	3.6	4.0	3.9	(1,200)
연령								
20~29세	3.2	3.7	3.9	3.5	3.6	4.1	3.9	(171)
30~39세	3.4	3.6	3.8	3.3	3.5	4.1	3.8	(182)
40~49세	3.3	3.6	3.8	3.4	3.6	4.1	4.0	(216)
50~59세	3.1	3.5	3.5	3.3	3.6	4.1	3.9	(238)
60세 이상	3.0	3.4	3.3	3.2	3.7	3.9	3.8	(393)
F	6.3***(a)	3.4*(a)	19.6***	5.9***(a)	0.6(a)	5.3***	2.4*(a)	
성별								
남성	3.3	3.3	3.4	3.2	3.5	3.9	3.8	(593)
여성	3.0	3.7	3.8	3.3	3.7	4.1	3.9	(607)
t	6.7***	-9.2***	-8.2***	-2.0*	-5.1***	-3.0**	-2.4*	
초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초등 이하 자녀 있음	3.3	3.6	3.8	3.4	3.6	4.1	4.0	(368)
초등 이하 자녀 없음	3.1	3.5	3.5	3.3	3.6	4.0	3.8	(832)
t	-3.2**	-0.9	-5.7***	-1.4	1.1	-2.0	-3.3**	

주: 1) 5점 평균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 1점 ~ '매우 심각하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① 남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②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③ 임신 또는 출산의 이유로 인한 차별 ④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 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 ⑥ 경제적 지위(직업, 소득 등)에 따른 차별 ⑦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
3) F 통계량의 (a)표기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임.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p.174-175 재구성.
* $p < .05$, ** $p < .01$, *** $p < .001$

집 중 조 명

과 3.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정도는 3.3점으로, '남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한국사회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에 문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주요 변인별로는 여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과 더불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그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며, 특히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20~30대에서 높게 나타나서 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현상과 관련되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에서 혐오표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어린 자녀(초등 이하)를 동반한 여성양육자

에 대해 평균 3.1점으로, 남성(2.6점)에 비해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어린 아동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은 2.9점으로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 양육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로써 혐오표현 문제는 여성 양육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린 아동(초등 이하)이나 양육자에 언급되는 표현의 사회적 허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혀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맘충 등)'이 55.1%로 절반 이상의 일반국민이 문제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초보자를 아동에 빗댄 표현(주린이, 요린이, 골린이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비율이 59.3%로 아동을 미숙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한국사회의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심각한 정도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어린 아동에 대한 혐오표현	10.3	23.4	37.1	22.2	6.9	100.0 (1,200)	2.9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 양육자(어머니)에 대한 혐오표현	10.1	20.1	33.8	24.3	11.7	100.0 (1,200)	3.1
어린 아동을 동반한 남성 양육자(아버지)에 대한 혐오표현	15.5	28.3	38.2	14.3	3.8	100.0 (1,200)	2.6

주: 5점 평균은 '낮음' 1점 ~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176.

〈표 10〉 온라인 상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의 공감 정도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구분	공감 정도			계(수)
	전혀 공감/이해할 수 없다	일정 부분 그렇다고 생각한다	공감이 된다/이해가 간다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빗댄 표현(주린이, 잼민이, 골린이 등)	28.2	59.3	12.5	100.0 (1,200)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맘충 등)	55.1	34.1	10.8	100.0 (1,200)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표현(진상부모 등)	22.7	43.9	33.5	100.0 (1,200)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178.

〈표 11〉 아동 및 양육자 혐오표현 사용관련 인식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구분	혐오표현 사용에 관한 인식			계(수)
	절대 사용하지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빗댄 표현(주린이, 잼민이, 골린이 등)	37.2	54.5	8.3	100.0 (1,200)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맘충 등)	62.7	31.0	6.4	100.0 (1,200)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표현(진상부모 등)	28.0	54.8	17.2	100.0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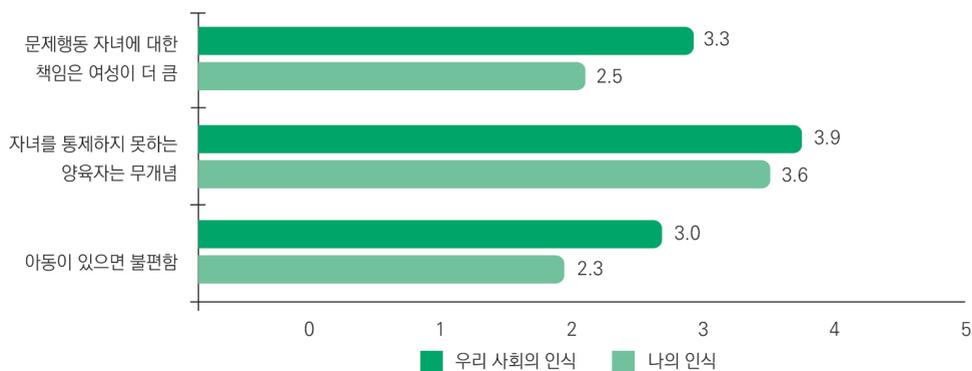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181.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절대 사용하지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엄마를 벌레에 비유한 표현(맘충 등)’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초보자 등을 아동에 빗댄 표현(주린이, 잼민이, 골린이 등)’ 37.2%,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표현(진상부모 등)’ 28.0%에 그쳤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양육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7.2%로 나타나서 이들 인식 위주로 가시화되어 전체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3)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과 배제 경험

우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아동과 양육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되, 응답자 개인의 생각과 한국사회의 인식을 구분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우선 3개 항목에 걸쳐 응답자 개인의 인식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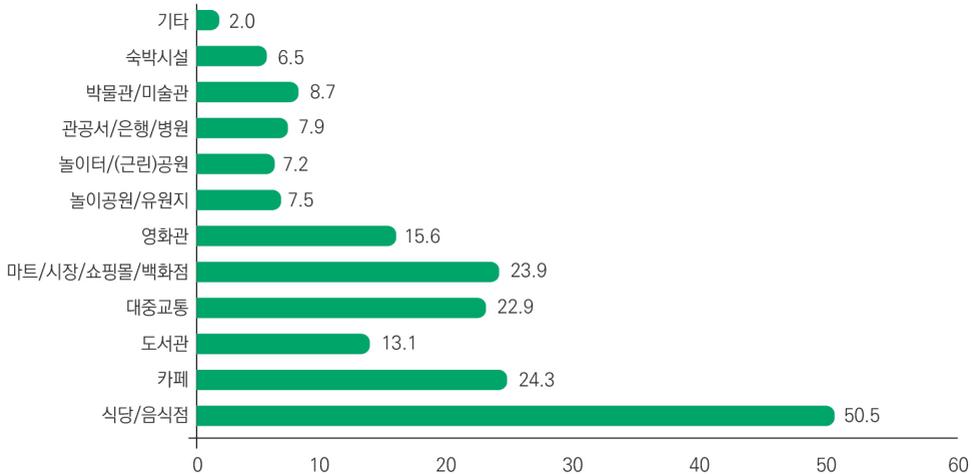
단위: 점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185.

〈그림 1〉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나의 인식과 한국사회의 인식_일반국민: 비교

단위: %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191.

[그림 2] 공공장소 유형별 아동 이용객으로 인한 불편 유경험 비율_일반국민

의 동의 비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은 한국사회는 74.8%(평균 3.9점, 5점 만점), 응답자의 경우는 62.6%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공공장소에 아동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낀다’에 동의한 비율은 한국사회는 33.7%(3.0점), 응답자 자신은 10.3%(2.3점)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해 응답자 자신의 생각보다 한국사회의 인식 즉, 사회적 분위기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자녀를 통제하지 않는 양육자가 공공장소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초등 이하)으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중복하여 응답한 비율은 식당과 음식점은 50.5%, 카페 24.3%, 마트(시장, 쇼핑몰, 백화점) 23.9%, 대중교통 22.9%, 영화관 15.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아동의 출입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공공장소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은 아동의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대응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 현상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4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사회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평균 3.9점, ‘모든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편하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와 ‘양육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는 공히 3.8점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표 12〉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동의 정도					계(수)	5점 평균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제약이 있다면, 아동이 공공예절을 배우거나 사회성을 습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	7.8	16.0	26.4	34.2	15.6	100.0 (1,200)	3.3
모든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편하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1.8	6.6	25.8	40.5	25.3	100.0 (1,200)	3.8
양육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1.6	5.1	26.7	40.5	26.1	100.0 (1,200)	3.8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사회적 태도가 필요하다	1.2	4.5	23.2	43.0	28.2	100.0 (1,200)	3.9

주: 5점 평균은 '동의 정도 낮음' 1점 ~ '동의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231.

〈표 13〉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응_일반국민: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중요도					계(수)	5점 평균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양육자가 타인(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다른 고객이나 이용자 등)을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0.5	1.1	13.6	42.4	42.6	100.0 (1,200)	4.3
아동이 적절한 예절교육 등을 익혀야 한다	0.2	1.2	11.2	39.4	48.0	100.0 (1,200)	4.3
어린 아동으로 인해 다른 고객이나 이용자(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업주가 당사자 부모에게 미리 공지하고 퇴장(이용 제한) 조치하도록 허용한다	3.4	9.6	27.1	36.7	23.3	100.0 (1,200)	3.7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이용 시 주의사항을 공지한다	1.7	4.2	21.7	44.9	27.4	100.0 (1,200)	3.9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공간에 한하여 어린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다	0.4	1.8	14.7	38.8	44.3	100.0 (1,200)	4.3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주 또는 운영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손해배상 관련 조치 등)를 마련한다	0.8	2.9	18.7	40.0	37.6	100.0 (1,200)	4.1

주: 5점 평균은 '중요도 낮음' 1점 ~ '중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234.

나. 유자녀가구의 공공장소 자녀동반 시 어려움과 지원요구

1) 공공장소에서 자녀훈육의 어려움

자녀 동반 시 공공장소에서 자녀 훈육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4개 항목에서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특성이나 기질로 인해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항목에서 40.6%, '육아로 인한 우울감이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버거운 경우가 있다' 30.3%로 조사되었다.

〈표 14〉 공공장소의 자녀 훈육 관련 어려움 여부_초등 이하 자녀 가구

단위: %, (명)

구분	자녀 훈육의 어려움 여부		계(수)
	예	아니오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특성이나 기질로 인해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40.6	59.4	100.0 (446)
육아로 인한 우울감이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버거운 경우가 있다	30.3	69.7	100.0 (446)
자녀에게 평소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엄격하게 훈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16.6	83.4	100.0 (446)
자녀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공공장소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22.0	78.0	100.0 (446)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p.208-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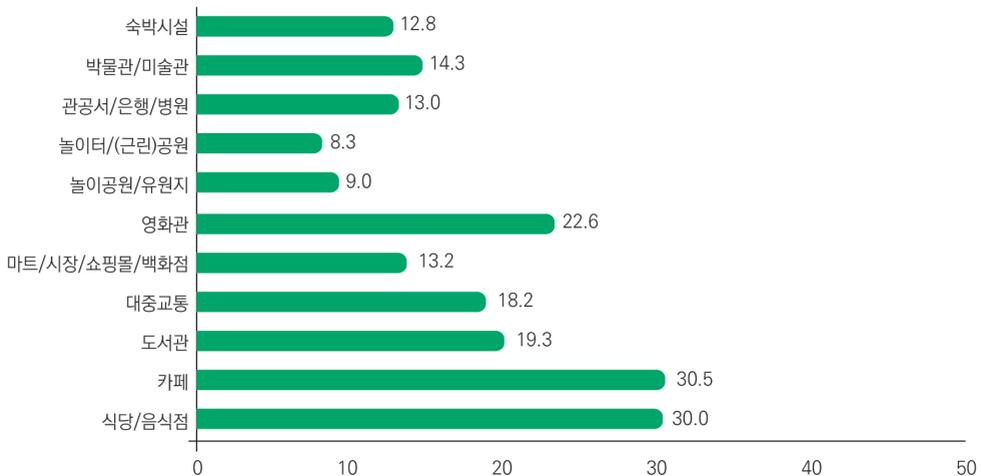
2) 공공장소 유형별 자녀 동반시 불편 경험

최근 1년 이내에 공공장소에서 초등 이하 자녀를 동반하였다는 이유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불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카페와 식당에서 30.5%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영화관

22.6%, 도서관 19.3%, 대중교통 18.2%, 박물관이나 미술관 14.3%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1년 이내에 초등 이하 자녀를 동반할 때, 출입/이용이 제한되거나 아이를 데려가면 불편할까봐 이용이나 방문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식당이나 음식점 34.1%, 카페 32.1%, 영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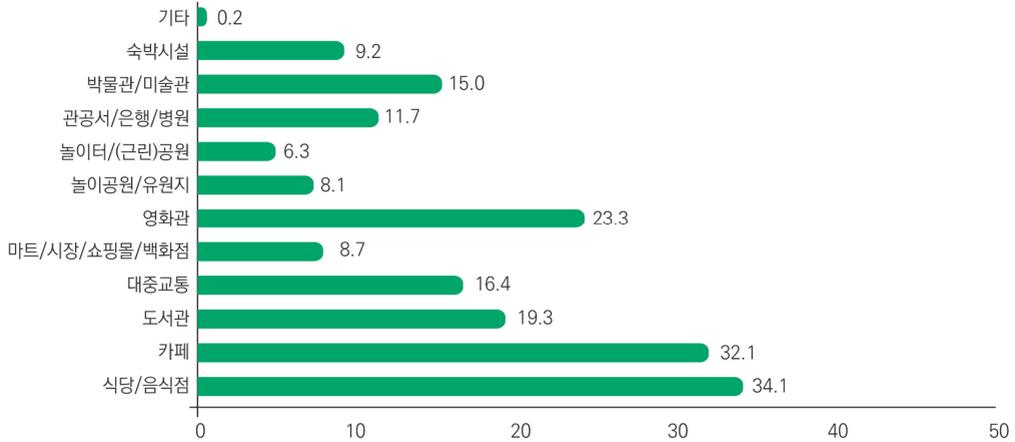
단위: %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211.

[그림 3] 공공장소 유형별 초등 이하 자녀 동반 시 불편 경험 비율

단위: %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216.

[그림 4] 공공장소 유형별 초등 이하 자녀 동반 시 출입/이용 제한 및 방문 포기 경험 비율

23.3%, 도서관 19.3%, 대중교통 16.4%, 미술관과 박물관 15.0%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 4 참고).

이러한 불편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자녀와

동반하여 식당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출입이 금지되거나 이용에 제약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장소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확인’ 47.1%, ‘대부분 확인’ 23.1%

<표 15> 초등 이하 자녀 동반 시 노키즈존 사전확인 여부

단위: %, (명)

구분	출입금지 및 이용 제약 사전 확인 여부			계(수)
	대부분 확인함	장소에 따라 필요한 경우만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전체	23.1	47.1	29.8	100.0 (446)
성별				
남성	18.3	44.0	37.6	100.0 (218)
여성	27.6	50.0	22.4	100.0 (228)
$\chi^2(df)$		13.687(2)**		
막내 자녀 연령				
영아	29.9	45.4	24.7	100.0 (97)
유아	31.3	44.2	24.5	100.0 (147)
초등 저학년	16.3	54.8	28.8	100.0 (104)
초등 고학년	11.2	44.9	43.9	100.0 (98)
$\chi^2(df)$		24.753(6)***		

주: 최근 1년 이내 기준임.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p.218-219.
 ** $p < .01$, *** $p < .001$

집 중 조 명

로 나타났다. 반면에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9.8%에 불과하였다.

주요 변인별로는 여성이 정보를 확인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막내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정보를 확인하는 비율(대부분 확인한다+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확인한다)이 높아서 영아와 유아 자녀의 경우 해당 비율이 75.3%와 75.5%에 달하였다.

3)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인식과 경험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4개 항목에 동

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온라인 상에서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와 '양육자 중에서도 남성(아버지)에 비해 여성(어머니)에 대해 더 적대적이다'에 동의하는 비율(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이 54.3%(평균 3.4점)와 50.5%(3.4점)로 조사되었다. 절반 이상의 양육자가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의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을 지닌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 변인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아 '온라인 상에서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와 '여성 양육자에 더 적대적이다'에 동의 정도는 공히 평균 3.4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 한국사회의 아동 또는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의 정도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동의 정도					계(수)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동을 문제거리로 인식하는 분위기이다	8.7	25.1	30.0	28.3	7.8	100.0 (446)	3.0
온라인 상에서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4.3	16.6	24.9	40.8	13.5	100.0 (446)	3.4
어린 자녀를 둔 엄마를 개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분위기 이다	7.2	21.7	27.1	30.7	13.2	100.0 (446)	3.2
양육자 중에서도 남성(아버지)에 비해 여성(어머니)에 대해 더 적대적이다	7.0	17.0	25.6	34.1	16.4	100.0 (446)	3.4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225.

〈표 17〉 한국사회의 아동 또는 양육자에 대한 인식 동의의 정도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수)
전체	3.0	3.4	3.2	3.4	(446)
성별					
남성	2.8	3.2	2.9	3.0	(218)
여성	3.2	3.7	3.5	3.7	(228)
t	-4.5***	-5.5***	-6.5***	-7.5***	

주: 1) 5점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 '매우 동의한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① 아동을 문제거리로 인식하는 분위기이다 ② 온라인 상에서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③ 어린 자녀를 둔 엄마를 개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분위기 이다 ④ 양육자 중에서도 남성(아버지)에 비해 여성(어머니)에 대해 더 적대적이다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225.
 ***p < .001

최근 1년 이내에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5개 항목으로 질문하였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본다' 64.3%,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준 적이 있다' 42.8%,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때를 쓰거나 뛰어다닐까봐

외출을 꺼린 적이 있다' 40.8%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으로 배려받지 못하고', '자녀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인한 무시 또는 비하'를 경험한 비율도 24.0%와 17.5%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가 공공장소에서 일상적으로 눈치를 보거나 타인에 대한 불편을 우려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18〉 공공장소 이용 시 배제 및 차별 경험 여부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전체

단위: %, (명)

구분	경험 여부		계(수)
	있다	없다	
나는 자녀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본다.	64.3	35.7	100.0 (446)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때를 쓰거나 뛰어다닐까봐 외출을 꺼린 적이 있다	40.8	59.2	100.0 (446)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준 적이 있다	42.8	57.2	100.0 (446)
나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 자녀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타인의 태도나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무시 당한 적이 있다	17.5	82.5	100.0 (446)
나는 자녀를 공공장소에 데려갈 때 사회적으로 배려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24.0	76.0	100.0 (446)

주: 세부 상황별로 최근 1년 이내 기준임.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226.

〈표 19〉 공공장소 이용 시 배제 및 차별 유경험 비율_초등 이하 자녀 가구: 주요 변인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64.3	40.8	42.8	17.5	24.0
성별					
남성	57.3	31.2	45.0	16.5	17.9
여성	71.1	50.0	40.8	18.4	29.8
$\chi^2(df)$	9.135(1)**	16.319(1)***	0.789(1)	0.281(1)	8.705(1)**
막내 자녀 연령					
영아	25.8	55.7	56.7	20.6	28.9
유아	29.3	42.2	54.4	18.4	27.9
초등 저학년	39.4	36.5	32.7	17.3	21.2
초등 고학년	51.0	28.6	22.4	13.3	16.3
$\chi^2(df)$	17.486(3)**	15.844(3)**	36.680(3)***	1.951(3)	6.106(3)
(수)	(446)	(446)	(446)	(446)	(446)

주: 1) 세부 상황별로 빈도는 최근 1년 이내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며, 차이검증은 경험 여부에 따른 결과임.
2) ① 나는 자녀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본다 ②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때를 쓰거나 뛰어다닐까봐 외출을 꺼린 적이 있다 ③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준 적이 있다 ④ 나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 자녀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이유로 타인의 태도나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무시 당한 적이 있다 ⑤ 나는 자녀를 공공장소에 데려갈 때 사회적으로 배려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3) 카이제곱 값의 (b)표기는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임.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p.227-228. 재구성
* $p < .05$, ** $p < .01$, *** $p < .001$

〈표 20〉 초등 이하 자녀와 공공장소 이용 시 조치의 필요도 인식_초등 이하 자녀 가구

단위: %(명), 점

구분	필요도					계(수)	5점 평균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어린이용 편의시설이나 용품(수저, 식기, 의자 등)을 구비한다	3.6	4.9	18.4	44.8	28.3	100.0 (446)	3.9
아동을 위한 조치(별도 메뉴, 별도 프로그램, 놀이 공간 조성 등)를 별도로 마련한다	4.7	6.7	28.5	42.8	17.3	100.0 (446)	3.6
어린 자녀와 동반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지정하여 안내한다	6.3	12.1	39.5	30.7	11.4	100.0 (446)	3.3
업주 또는 시설 관리자가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시설 및 설비(안전 펜스, 모서리 보호대 등)를 강화한다	2.2	7.2	27.8	44.6	18.2	100.0 (446)	3.7
국가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한다	4.5	8.1	30.3	35.7	21.5	100.0 (446)	3.6
국가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업소나 시설을 지정하여 지원한다	7.4	11.0	29.8	35.4	16.4	100.0 (446)	3.4
국가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오케이크존, 웰컴키즈존 등)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한다	4.3	5.8	26.2	39.7	24.0	100.0 (446)	3.7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 ~ '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 외(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pp.228-229.

4) 공공장소 이용시 지원요구

공공장소를 자녀와 함께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의 필요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어린이용 편의시설이나 용품(수저, 식기, 의자 등)을 구비한다' 평균 3.9점, 업주 또는 시설관리자가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시설 및 설비(안전 펜스, 모서리 보호대 등)를 강화한다'와 '국가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오케이크존, 웰컴키즈존 등)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한다'가 공히 3.7점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을 위한 조치(별도 메뉴, 별도 프로그램, 놀이 공간 조성 등)를 별도로 마련한다'와 '국가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한다'의 필요도가 공히 3.6점으로 조사되었다.

4. 공공장소의아동에 대한배제 현상의 진단과 사회적 대응 방안

가. 아동 배제의 실상과 원인 진단

공공장소에서 아동이 배제되는 현상을 진단하여 그 실상을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발달 및 기질적 특성과 다차원적 배제에 대한 낮은 이해도

일반국민은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수용성은 높으나, 발달 특성이나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서 그 책임이 전적으로 양육자시 있다고 인식하는 경

향이 있다. 영유아의 울음이나 소란스러움 등 문제행동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기질 등으로 부모가 통제하거나 훈육하기 힘든 상황을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비율은 20~30대에서 각각 80.2%와 85.2%에 그쳤다.

또한 어린 아동이 공공장소 및 공간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단지 특정 장소의 출입이나 이용의 제한에 국한되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당연시하여 다른 영역으로 아동 차별을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평균 3.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2) 여성 양육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표현의 확산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어린 아동이 아니라 문제행동 자녀를 적절하게 훈육하지 않는 양육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나, 양육자 전반의 부정적 편견이 야기되고, 특히 여성 양육자에 대해서는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있어서 우려 된다. 양육자에 대한 부당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표현은 곧 여성 양육자로 인식되어 여성 양육자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셈이다. 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이를 동반하는 외출을 꺼리거나 자녀 동반 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전대비 등 양육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자녀훈육 영향 요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

일반국민 조사에서 노키즈존의 등장 배경으로 지목되는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지 않는 부모

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차원적 이해가 요구된다. 다시말해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에 대한 원인을 양육자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을 짓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자녀 훈육의 어려움을 경험한 상황으로는 자녀의 기질이나 특성 또는 컨디션, 육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양육기술의 부족 등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4) 아동 및 양육자 배려의 구조적 취약성

아동 및 양육자를 배려하기 위한 구조적 요건으로는 사회적 신뢰도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반국민 인식 조사에 의하면,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비해 이타주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우려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나와 다른 특성을 지닌 타인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타인에게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사회 환경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어린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정부 사업으로 한계를 지니며,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환경의 조성이 그 기반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나. 사회적 대응의 방향과 정책 과제

공공장소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지역주민 등이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므로 공동체 경험을 통해 사회적 배려와 관용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점을 주목하여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의 진단은 단지 출입 가능 여부가 아니라 아동 특성이 반영된 공간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

너 동반시 불편사항은 단지 식당 등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아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치는 공공장소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세부과제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 제도적 기반 조성

첫째, 아동친화업소 관련 사업의 일원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노키즈존의 확산을 예방하는 즉각적인 조치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을 출입을 허용하는 업소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을 배려하는 업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추진 중인 키즈존 사업, 특히 오케이키즈존과 예스키즈존의 경우는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 마땅한 공공의 장소나 공간에 대해 어린 아동의 경우는 출입과 이용 가능 여부를 양육자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오히려 노키즈존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동친화 우수업체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보건복지부령)으로 마련하되,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키즈존 사업은 그 사업 명칭이 지역마다 다르고 지정 기준과

운영관리 사항도 달라서 일원화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아동 및 양육자 배려 문화의 확산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키즈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내 공공시설이나 장소에서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를 배려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동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와 제8조에 의거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이때 아동출입 제한 범위는 기존의 업소 이외에 공공장소와 시설을 추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동친화 장소나 공간을 활성화 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조성하는 아동친화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표 21〉 아동친화 우수업체 인증사업의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6조의2(아동친화 우수업체 인증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영업을 아동친화업소(이하 이 조에서 "아동친화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아동친화업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영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아동친화업소의 신청·인증 및 표지, 지원,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조례는 아동친화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공 부문에 한정하여 공간이나 시설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조례를 근거로 하여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는 업소나 시설을 아동을 배려하는 설비를 구비하거나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다양한 연령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아동안전 시설 구비, 아동권리 교육 등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친화 공공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민관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편의성 수혜 등에서 양성 간의 조건을 균등하게 달성하는 것을 성평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 양육자에게 편중된 편견은 관련 조례의 제정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본다. 즉,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에서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의 복합적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린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를 배려하는 조치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과정에서 요구되는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위한 근거 규정도 갖추고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세부 과제

가) 아동 존중 및 배려의 적극적 조치

첫째, 아동친화 업소 인증 및 운영기준의 전국적 일원화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출입을 허용하는 사업 명칭보다는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부각되는 사업 명칭을 고안하고(가칭: 위드키즈),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이나 양육친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우수 업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아동친화

업소의 인증 기준으로는 어린이 편의시설 구비, 위생청결 관리, 아동 배려 조치사항 등 서비스 제공 내용이 고려될 수 있다. 이들 업체 또는 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관련 정보의 공시 등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편의용품 등 업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증 업소 재인증을 위한 현장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교육(아동권리교육,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아동친화 인증 업소의 준수 사항으로는 아동 이용객에 대한 존중과 배려,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에 대한 배려, 인증 표찰의 부착, 시설 안전과 위생관리 기준 이행에 관한 사항을 고려할만하다. 또한 인증 업소의 관리를 위해 폐업 등에 따른 통보 조치를 의무로 부과한다. 인증 업소에 대한 점검은 연중 1회 이상 실시하되,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해야 하는 항목을 명시한다. 이에 앞서 지역 내 대상 업소의 전수조사와 인증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둘째, 인증 업소 대상 정부 안심보험을 도입한다. 영리 목적의 민간 영역에서 아동을 배려하는 추가적인 비용 투자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업소의 경우에도 아동의 안전 문제로 인한 우려도 어린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는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는 일정 공간에 한하여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업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셋째, 아동 및 양육자 배려 조치에 관한 정보 제공서비스를 지원한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가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을 이용할 시에 아동을 배려한 물품이나 시설 구비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된 정보 제공 방식을 고안하여 해당 업소나

시설에서 배포한다. 식당 등 업소와 공공장소 및 시설의 입구에 아동을 배려한 조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조치에 관한 안내문을 공지하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을 위한 물품이나 시설을 구비한 경우 해당 정보를 담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물품이나 시설별로 디자인하여 유관 업소에 제공한다.

넷째,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어린 아동의 우선 입장이 제도화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려가 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가 우선적으로 입장하여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2023년부터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 창구 등에서 임신부나 자녀 동반 양육자를 우선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아동가정청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이 중심 사회의 실현을 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다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⁶⁾. 기시다 총리는 저출생 대책 중의 하나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아이 중심 사회의 실현을 주요 목표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적용 시설은 2024년에 도입 당시 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유형도 점차 다양화 되어 공공청사(여권 업무, 운전면허 업무, 주민등록 업무 등), 대중교통(철도, 버스, 항공, 여객선), 공립 미술관 박물관 극장, 정부 지원 각종 행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공공장소 유형별 아동친화 환경조성 방안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은 자연친화적이고 넓

은 규모의 유휴 공간을 갖추고 있으므로 아동을 위한 놀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에 용이하다. 정부청사 등과 같은 공공 부문의 시설은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특성을 지닌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공간을 추구하는 데 적합하다. 공공청사의 열린 공간은 아동 관련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대여할 수 있으므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공간의 대여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간 대여의 범위를 공공 부문에 한정할 것인지, 행사 등의 목적을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마련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아동의 놀이권 보장 차원에서 다양한 실외놀이터와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때 아동의 특성이 반영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 단체 등 민간 부문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협의기구 또는 자문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된다.

도서관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숙이 요구되는 공간이므로 어린 아동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역 내 소규모 도서관의 경우는 지리적 접근성이 높으나 어린이를 위한 독서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작은 도서관을 어린 아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별도의 건물이나 분리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작은도서관

16) 일본 어린이가정청,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 2024. 8. 27. 인출.

의 경우는 어린 아동을 위한 설비가 요구된다. 어린 아동을 위한 공간을 분리하되, 이들 공간을 온돌 기능을 갖춘 좌식 공간으로 구성하여 어린 아동이 엎드리거나 누워서 책을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한 아동을 위한 공연이나 놀이 프로그램을 추가로 기획하고, 돌봄서비스를 병행 운영하여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그 밖에도 아동을 배려하는 설비와 프로그램이 운영되므로 어린 아동을 동반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공지하여 양육자는 물론이고 다른 이용객의 배려와 이해를 구하도록 조치한다.

미술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대표적인 열린 공간이며, 특히 아동에게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장소에 해당하지만 미술작품의 파손 등이 우려되어 어린 아동의 출입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어린 아동이 미술관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술관 내의 공유 공간을 활용하여 아동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등 아동에게 미술관을 놀이터로 인식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이들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소재의 기업과 협력하여 어린 자녀와 함께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가족친화기업 운영의 일환으로 운영시간 이외 시간대에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만하다. 이때 일반 이용객의 줄어드는 시간대를 지정하여 어린 아동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람시간을 지정하여 공지하고, 이때 다른 고객에게 어린 아동과 함께 이용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공연장은 예술이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공연

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어린 아동이 공연을 놀이로 인식하여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소규모 공연장을 발굴하여 어린 아동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며, 공연 중간에 전문 해설자의 공연 진행을 편성하는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또한 공연 시작 전에 아동 및 양육자에게는 공연 예절을 강조하고, 공연이 종료된 이후에는 참여한 아동을 격려하며, 다른 이용객에게 어린 고객이 함께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게 된다는 점을 공지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들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친화 또는 양육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때 비용지원 요건으로는 전체 공연에서 아동의 관객의 비중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아동 연령과 공연 횟수, 연주자의 전문성, 아동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